

三. 전체공민들과 일체주권기관 정당 사회단체 및 군사기관들은 군사위원회의 결정 지시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위원장 김 두 봉
 -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시기강 강 량 옥
 -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 一九五〇년 六월 二十六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김일성수상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함에 관하여

조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같이 결정한다.
김일성수상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한다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위원장 김 두 봉
 -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시기강 강 량 옥
 -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 一九五〇년 七월 四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결정 제一二九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三八도선 이남해방 지역에 있어서의 세금제도 실시에 관한 결정서

【중앙+일방 조선중앙통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은 공화국三八도선 이남해방 지역 내에 있어서 공정한 민주주의적 세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인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또한 민주적인 인민정권기관들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1. 공화국三八도선 이남지역에서 해국노 위생관리회정변의 실시하고 있던 반인민적 탁발과 세금제도를 폐지한다.
2. 공화국三八도선 이북지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세금제도를 공화국三八도선 이남해방지역에 실시한 것이며 원처 세외부담을 인민에게 부과하는 것을 엄금한다.
3. 해방지역에서와 본세금제도의 실시방법은 그 특수정형을 참작하여 집행할 것을 재정부에게 위임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 일 성

재정상 최 창 익

一九五〇년 七월 九일 평 양 시

四. 공화국 남반부 해방지역의 군 민 리(동) 인민위원회 선거를 위한 중앙 선거 지도부를 다음과 같은 성원으로 구성한다.

김원봉 장순영 옹기 리순갑 현운 직철성 남성민 리환기 한세

최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위 원 장 김 두 봉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 기 장 강 량 옥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 기 장 강 량 옥

一九五〇년 七월 十四일 평 양 시